

「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3월 3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3월 4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3월 12일

제2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경제국장 김 영 철

나. 제안이유

- 「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의 서비스사업에 대한 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관련 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
- 기업부설연구소 및 소속 인력의 관내 이전에 대한 혜택과 지원으로 기업의 지역 정착 도모, 연구시설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 촉진

다. 주요내용

- 연구인력 및 서비스사업에 관한 정의 신설(안 제2조)
- 기업부설연구소 신증설, 임차 및 이전에 대한 지원 (안 제23조, 제24조)

- 연구소를 관내 이전,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(안 제25조)
- 관내 이전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에 대한 혜택(안 제27조)
- 관내 신설 등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소속 인력 처우개선(안 제28조)
-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38조)
- 용어, 띄어쓰기 및 인용사항 정비(안 제2조~제4조, 제6조, 제9조, 제11조~제13조, 제15조, 제21조, 제25조의2~제26조의2, 제29조~제31조, 제3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산업발전법 시행령」 제3조
 - 「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 제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- 본 조례안은
 - 지식서비스산업과 기업부설연구소 및 인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- 검토 결과,
 - 본 개정안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신·증설 및 이전에 대한 지원 근거(안 제23조 ~ 제25조)를 마련하고, 해당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혜택(안 제27조 ~ 제28조)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38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,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다만, 연구소와 연구인력 우대 시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바, 안 제27조에 명시된 연구인력 지원 혜택의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때, 객관적인 지원 기준과 범위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인 만큼, 신설되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

- 연구소 및 연구인력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, 연구직 우대 조치가 제조 인력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형평성 검토가 필요함.
- 안 제2조제7호에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오류가 있어, 현행법에 맞춰 정비하여야 함.

- 안 제2조제13호에서 “서비스사업”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, 이를 “지식서비스사업”으로 수정하여 정책 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여야 함.
- 안 제35조제2항에서 보조금 반환 집행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.
-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르면 자치법규는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, 본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일에 그쳐, 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